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정부조직법」 일부 개정에 따른 검찰 개편 사항 및 기획재정부 분리·개편 사항에 따라,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「국민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총리령 제 호

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기획재정부”를 “재정경제부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검찰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)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30조제3항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”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 다. 1. <u>기획재정부</u> , 법무부, 경찰청 2. ~ 4. (생 략)	제2조(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1. <u>재정경제부</u> 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